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69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송옥주

문금주 · 서삼석 · 이병진

어기구 · 문대림 · 임미애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 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 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산자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로, "하한가격"을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영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제9조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 관리시 농업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협의"를 "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

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워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3항"을 "제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를 "제9조의3,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제9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 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u>
	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
	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
	<u>다.</u>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
	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
	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
	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
	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생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 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

제6조(계약생산)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 제8조(가격 예시) ① ------품부장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 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 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 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 기 이전에 <u>생산자를</u> 보호하기 위한 <u>하한가격</u>[이하 "예시가격"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 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 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u>생산자와 소비자를</u>
<u>하한가격과 상한가</u>
②
<u>생</u>
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
<u>영상황</u>
③
협의한

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 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 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략)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수 있다.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u> 거쳐야</u>
4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5. (현행과 같음)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①
<u> 농산물</u>

②·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채소</u> 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u>⑤</u> (생 략) <신 설>

		/ =1 =11 =1	-1 0 \
(2) •	(3)	(혂행과	같음)

④ ----- <u>농산물</u>-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 면적 관리시 농업인 소득감소분 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의2(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 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 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 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

 용권 지급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제9조의2(</u>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생 략)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 ① (생 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렁 또는 해양수 산부렁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 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 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 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 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런하기 위하	_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조의 <u>3</u>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	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_
		-
		-
		-
		-
		_
		_
		_
		_
		_
	<u>협의한 후 수</u> 급조절	
	위원회의 심의	_
	ग्रंभन वन	
		-
		-

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
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 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 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 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 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 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 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 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신 설>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 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 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 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 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 <u>다만, 농산물가격안</u>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 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약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 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한 대상 품목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u>장가격</u>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1. • 2. (생략)

-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3. 제9조의3제3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 4. (생략)
- ②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
- 1. (생략)

<신 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 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생략) <신 설>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1. • 2. (생략)

- 4. (생략)
- ②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 2. -----제9조의3,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

- 3. ~ 5. (생 략)
- ③ ~ ⑤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u> ~ <u>3.</u> (생 략)

3의2.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u>5.</u>·<u>6.</u> (생 략)

④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

-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 3 -----
-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보고를 한 자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u>4의2</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5의2.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